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가 족 정 책 과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4. 12. 31.)

나.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시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나. 추진근거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5)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6)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5조

다. 위탁사무 :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전반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가족관계개선사업

2) 가족돌봄 및 가족생활지원사업, 지역공동체지원사업

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가족 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구미시가족센터 건물 및 시설물 관리

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시설개요

1) 소 재 지 : 구미시 산책길 73(원평동)

2) 규 모 : 건물 989.82㎡(지상 3층), 토지 2,393㎡

3) 위탁시설 : 어린이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상담실, 사무실 등

마.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바. 소요예산(산출근거) : 연간 2,175백만원 정도(국 45% 도 14% 시 41%)

사. 위탁조건

1)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 단체사무 처리 불가

2)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3)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아.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결정

1) 성과평가결과 : 탁월(98점)

- 기본사업, 예산 및 회계처리, 복무사항, 시설 운영 등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 있음.
- 코로나19 등 외부 영향으로 당초 계획대비 사업 목표량을 달성 다소 미흡

2)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재계약 의결

자.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3. 부서의견

가. 운영 기간 내 2023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전국 244개 센터 중 24개 센터)

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사)아름다운가정만들기에 재계약함이 적합하다고 판단

4. 참고사항

가. 성과평과 결과 및 성과보고서

나.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 사진대지

라.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마. 비용추계서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위탁사무명 :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 위탁기관 : (사)아름다운가정만들기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사 업 비 : 5,654백만원

○ 평 가 자 : 2명(가족정책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운영 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

○ 평가항목

부문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평가항목	사업 계획	인력 관리	예산 관리	성과 관리	기관 운영	자원 관리	서비스	만족도
배점(100)	10	10	10	10	10	10	30	10
평점(98점)	10	10	10	9	10	10	29	10

2. 평가결과

○ 평가점수 : 98점(100점 만점)

○ 총 평

- 『2022~2024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기본사업, 예산 및 회계처리, 복무사항, 시설 운영 등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 있음.
- 코로나19 등 외부 영향으로 당초 계획대비 사업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며, 분야별 사업이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한 점이 다소 미흡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1. 사업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2. 사 업 비 : 5,654백만원

3. 사업내용 : 가족통합지원서비스, 가족·교육·문화·돌봄·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4. 추진실적

○ 2022년 사업성과 실적

구분	총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사업수(건)	89	25	10	35	19
회기수(회기)	21,154	2,796	1,101	13,699	3,558
참여인원(명)	79,898	5,553	12,890	19,868	41,587
만족도(점)	4.87	4.85	4.88	4.88	4.87

○ 2023년 사업성과 실적

구분	총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사업수(건)	87	24	14	34	15
회기수(회기)	22,158	3,121	6,230	8,692	4,115
참여인원(명)	108,117	6,727	25,519	16,306	59,565
만족도(점)	4.86	4.84	4.85	4.89	4.87

○ 2024년 사업성과 실적(8월 말 기준)

구분	총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사업수 (건)	69	10	21	27	11
회기수 (회기)	13,079	418	4,920	6,363	1,378
참여인원 (명)	63,040	2,185	10,802	13,112	36,941
만족도 (점)	4.84	4.77	4.86	4.88	4.84

○ 주요 수상실적(2022~2024년)

- 2022년 가족서비스 종사자 우수프로그램 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
- 2023년 가족센터 사업운영 평가 우수기관(여성가족부장관)

※ 15년 5회 연속, 사업운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일　　시 : 2024. 09. 26.(목) 15:00

○ 장　　소 : 본관 3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심의위원 8명

○ 심의대상 : (사)아름다운가정만들기(대표 김종배)

○ 심의내용 : 심의 배점표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 심의

○ 심의방법 : 심의기준에 의한 평가 및 사업실적을 고려 재계약 여부 심의

- 심의기준 : 3개 분야, 19개 항목
- 채점방식 : 심의위원 평가점수 합산·평균
- 결정방법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시 **'적격'**으로 수탁 결정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심사 평균점수가 87점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단법인 아름다운가정만들기」를 수탁기관으로 **재계약 의결**함.

심의안건	심사위원별 점수								심사 평균 점수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80	94	90	89	82	90	86		87

사진대지

□ 위 치 도

□ 현장전경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1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인력 운용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부터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사업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3년간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6,525백만원으로 연평균 2,175백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2차 연도부터 통합 운영비 매년 인상률 2%로 반영함.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출	2,132	2,175	2,218	6,52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960	979	998	2,937
도 비	298	304	311	913
시 비	874	892	909	2,675
민 간	-	-	-	-
기 타	-	-	-	-
합 계	2,132	2,175	2,218	6,525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이성민(☎480-655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사 무 명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위 탁 금			6,525백만원(3년간)
위 탁 금 세 부 내 역			
기 간	항 목	계(천원)	산 출 내 역
2024년 기준	합 계	2,131,640	
	인건비	839,364	• 급여 및 제수당 등(통합인력) : 41,968,200원 × 20명
	운영비	104,820	•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 104,820,000원 × 1개소
	사업비	1,187,456	• 센터 통합운영(기본사업) : 439,466,000원 × 1식 • 자녀돌봄품앗이 : 15,000,000원 × 1식 •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 10,000,000원 × 1식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283,560,000원 × 1식 •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 85,250,000원 × 1식 •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 45,147,000원 × 1식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 40,590,000원 × 1식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180,243,000원 × 1식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68,200,000원 × 1식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20,000,000원 × 1식

※ 매년 2% 인상률 기준

소 관 부 서		가족정책과
입	과 장	민 영 미
안	팀 장	김 종 우
자	담 당 자	이 성 민 (480-6552)